렌터카 차량손해보험

렌터카 차량손해보험 보통약관

1. (회사의 보상책임) 회사는 피보험자가 대한민국내(북한지역을 포함)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제외합니다)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니다.
   ①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②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또는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피보험자동차를 빌어 쓴 사람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③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④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⑤ 지진, 분화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⑥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⑦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서 취하여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⑧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밖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⑨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 생긴 손해. 다만,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타이어나 튜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⑩ 피보험자동차의 도난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⑪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전기적, 기계적 손해
   ⑫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단,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은 제외)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한 때에 생긴 손해
   ⑬ 피보험자동차를 운송하는 동안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⑭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 피보험자동차를 빌어 쓴 사람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계되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를 포함합니다)가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
   ⑮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 피보험자동차를 빌어 쓴 사람 또는 피

보험자동차에 관계되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를 포함합니다)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때에 생긴 손해

⑯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 렌터카사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중 생긴 손해

3. (피보험자) 이 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4. (피보험자동차) 이 약관에서 피보험자동차라 함은 기명피보험자가 대여한 렌터카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자기차량손해에서 렌터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에 의하여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행하는 대여자동차를 말합니다.

5. (보상한도 및 손해액의 결정) [1]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매 사고당 300만원을 한도로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다. 그러나, 한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3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고치는 데 드는 수리비를 손해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에 잔존물이 있을 때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친 금액을 수리비로 합니다. 그러나, 새 부분품의 교환으로 피보험자동차의 값이 증가할 때에는 증가된 금액을 공제합니다.

[4]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비용 또는 그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가운데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수리비의 일부로 봅니다.

6. (비용) 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7.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는 사고가 발생한 때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금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그밖에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제2항에 정한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로부터 7일이내에 보험금을 정하여 지급합니다.

4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3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5 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8. (가지급보험금의 청구)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할 금액의 50% 해당액을 피보험자에게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피보험자는 가지급보험금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나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피해물에 대한 회사의 권리) 1 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로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할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회사에 이전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 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10. (현물보상) 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11. (책임기간 및 보험약관의 교부) 1 책임기간

① 우리회사의 보험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시작되어 마지막날 24시에 끝납니다.

② 우리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2 보험약관 등의 교부

① 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6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①호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및 이자(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반환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12. (계약전 알릴 의무) 우리회사는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피보험자, 보

험계약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의 주소지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회사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해지가 보험사고가 생긴 후일지라도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며, 이미 보험금을 드렸을 때에는 피보험자는 이를 우리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13. (계약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①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을 맺을 때

②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합니다), 구조변경 또는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기재사항중 중요한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③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기타 폭발물, 인화성 있는 위험물을 실을 때

④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는 사실의 발생을 안 때

② 회사는 제①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사실에 대하여 차액보험료를 돌려 주거나 더 받고 승인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4. (보험료의 반환 또는 추가보험료의 청구) ① 회사가 약관 12.(계약전 알릴 의무), 약관 13.(계약후 알릴 의무)의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①항의 추가보험료의 납입을 청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15. (피보험자동차 등에 관한 조사) 회사는 피보험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필요한 설명 혹은 증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16.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이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17. (보험계약의 해지) ①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피보험자동차의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②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로 된 경우

③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④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경우

2 회사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의 주소지에 서면통지함으로써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이 약관 13.(계약후 알릴 의무)의 제1항에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이 약관 14.(보험료의 반환 또는 추가보험료의 청구)의 규정에 의거 회사가 추가보험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동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③ 보험금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혹은 보험금을 수령하는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때.

3 제2항 제①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회사가 이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와 관련이 있을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8. (보험료의 환급) 1 무효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된 경우에는 회사가 무효의 사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2 효력상실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효력상실된 경우에는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효력상실된 경우에는 효력상실의 사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3 해지

①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이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② 제①호 이외의 사유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9. (사고발생시의 의무)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곧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등의 경우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② 다음 사항을 회사에 서면으로 곧 알려야 합니다.
가) 사고발생의 때, 곳, 상황 및 손해의 정도
나) 피해자의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다) 가해자의 주소와 성명
라) 사고에 대하여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주소와 성명
마)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③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 미리 회사의 동의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④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걸려고 할 때, 또는 걸어온 때에는 서면으로 회사에 곧 알려야 합니다.
⑤ 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증거를 요구한 경우에는 곧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손해를 조사하는 데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전항에 열거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공제하고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20. (보험금의 분담)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이 하는 다른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보험에 의한 보상책임액}}{\text{다른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21. (계약내용의 제공)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①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번호, 형식, 년식
② 계약일시, 보험종목, 담보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제할인할증적용과 특약가입사항, 계약해지시 그 내용 및 사유
③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22. (분쟁의 조정)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

여 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 (대위)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피보험자는 제①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제①항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의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자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가지지 아니합니다.

24.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25.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회사(점포, 보험모집인 및 보험대리점을 포함)가 보험모집과정에서 제작·사용한 보험안내장(서류, 사진, 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를 포함)의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26.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27.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